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안번호 제610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2. 1 고흥호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00. 2. 1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0. 2. 10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1999. 8. 31 법률 제6002호 및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법 및 시행령에 의거 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코져 함에 있음.

3. 주요골자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를 정례회로 한다.(안 제1조)
나. 종전 매년 정기회 1회 35일 하던 것을 정례회는 매년 2회 35일로 한다.(안 제2조, 제3조)
다. 1차 정례회는 7월 5일에 하고 2차 정례회는 12월 10일로 한다.
단,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의회의결로 7월, 8월 중 따로 정할 수 있다.(안 제4조)
라.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승인, 기타 부의안건으로 하고, 2차 정례회는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 등 처리(안 제5조)
마. 그외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안 제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 법률 제6002호 및 대통령령 제16672(1999.12.31)호로 지방의회 운영에 따른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 의거 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코져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0. 2. 1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